

第 52 回 忠清北道教育委員會(臨時會)

本 會 議 會 議 錄

(' 95. 8. 29 ~ 8. 30.)

忠清北道教育委員會

本會籌備會
第一屆第一次全體會議

中華民國三十一年一月一日

목 차

1995 • 8 • 통권 제42호

I. 개회사	3
II. 제52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7
III. 제52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11
IV. 부 록	
1. 의사일정(안)	13
2.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5

本 會 議 會 議 錄

忠清北道教育委員會 議事局

1995년 8월 29일 (화요일) 15시 00분

開會式順(第52回 臨時會 開會式)

1. 개식
2. 국기에 대한 경례
3. 개회사
4. 폐식

(사회: 의사과장 강인형)

(15시 00분 개식)

● 의사과장 강인형

지금부터 제52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개회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전면의 국기를 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주악)

바로.

이하는 생략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장님께서 개회사를 하시겠습니까.

다.

개 회 사

● 의장 김영세

존경하는 교육위원님, 정인영 교육감님과 국.과장, 그리고 언론훈계 인사 여러분!

오늘은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제52회 임시회가 개최되는 뜻깊은 날입니다.

특히 오늘 회의는 저희들 초대 민선 교육위원들의 마지막 모임으로 임기 4년동안 함께 일하면서 오손도손 지내왔던, 깊은 감회가 만감을 교차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지난번 뜨거웠던 폭염 속에서도

[제52회-개회식]

제2기 교육위원 선출로 교육계의 비상한 관심속에 새로운 변화와 개혁을 모색하게 되었고, 크고 작은 사건의 빈발과 시대적 격변속에 당혹스러운 때도 한두번이 아니었지만, 역사는 지금, 지금도 21세기의 새로운 세계를 향하여 힘차게 질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님, 지난 임기 4년동안 우리는 혼신의 힘을 모아 지방교육자치의 정착과 내고장 충북교육의 변화와 발전을 이끌어 내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왔습니다.

또한 교육감을 비롯한 집행기관에 대하여도 허심탄회한 협력 관계를 조성, 확대하기 위하여 힘써왔으며, 때로는 충정어린 비판과 견제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일부의 담당자들은 비판과 견제를 왜곡시키고 불만으로 작용한 것은 심히 유감스러운 일로 지적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이는 교육자치의 논리와 충북 교육의 발전이라는 대승적인 견지에서 보다 긍정적으로 수용되어야 할 것으로 매우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51회의 정기회, 임시회를 개최하면서 221일 간의 회기를 통하여 의안 124건, 일반안건 205건, 총 329건을 심의·의결하였고, 11차례에 걸쳐 22개 학교현장과 교육기관을 방문하였으며, 각종 교육 의안의 심도있는 의결을 위하여 사안이 발생

할 때마다 99회의, 99회에 걸친 의안 관련 현장방문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다섯차례에 걸친 전국 교육위원 대회의 참석과 네차례의 자체연수와 교육위원 업무수행의 내실 도모에도 힘써왔습니다.

특히 네차례에 걸친 집행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활동은 교육행정의 시정, 검토, 개선을 위한 값진 활동으로 평가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소임에 충실하기 위한 한결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150만 도민과 학부모, 그리고 만 2천여 교육동지들의 기대와 열망에는 미흡한 상황속에 임기를 마치게 된 점에 대하여는 진실로 송구스럽고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이는 초대 교육위원으로서 교육자치의 초석을 다지기에 여념이 없었던 때문으로 생각하며 관대한 이해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님!

이제 우리는 조국광복 50년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면서 21세기를 위한 새로운 출발과 지구촌의 경쟁을 슬기롭게 헤쳐갈 우리 교육의 참된 변화와 개혁을 다시한번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세계화, 정보화, 개방화, 지방화란 국가적 4대 과업을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우리 교육의 변화와 개혁을 앞장서서 도출하고 인재육성을 위한 새롭고도 구체적인

第52回 謝辭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학교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을 보다 폭넓게 신장시켜 주고, 특색 있는 지방교육의 실천과 창의성과 사교력의 신장은 물론 고등정신기능의 함양에도 각별히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2세들이 미래사회의 훌륭한 주인공이 되고, 지역과 나라발전의 튼튼한 기수가 되며, 인간답고 행복한 생활을 창조할 수 있는 세계적 중심 인물로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교육감님, 그리고 국·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여러분의 값진 땀과 헌신적 노력은 참으로 우리 고장 교육발전에 찬란한 기록으로 오래도록 빛날 것입니다.

그동안의 협조와 노고에 대하여 충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저희들은 4년간의 임기를 마치고 떠나게 되었습니다.

비록 우리가 떠난다 하더라도 내고장 충북 교육의 도약과 발전이라는 대명제는 중단할 수 없는 과업으로 남아있을 것입니다.

부디 다하지 못한 우리들 교육위원들의 어려웠던 충정을 살펴주시고, 2세 교육을 위한 인재육성에 더욱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존경하는 교육위원님, 교육감님, 교육가족 여러분과 언론계 인사들 여러분,

더욱 건강하시고 늘 집안에 큰 행운이 함께 하시길 손모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1995년 8월 29일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의장 김영세

本 會 議 會 議 錄

忠清北道教育委員會 議事局

1995년 8월 29일 (화요일) 15시 08분

議事日程 (제5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1. 제52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

附議된 案件

1. 경과보고
2. 제52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3.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4. 회의록 서명위원 선출의 건

(사회: 의사과장 강인형)

(15시 08분 개의)

● 의사과장 강인형

이상으로 개회식을 마치고, 이어서 바로 본회의가 시작되겠습니다.

● 의장 김영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2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1. 경과보고

● 의사과장 강인형

의사과장 강인형입니다.

먼저, 임시회 소집 및 집회공고에 관한 사항입니다.

'95년 7월 10일 교육감으로부터 집회요구되어 '95년 8월 22일 충청북도교육위원회 공고 제'95-7호로 공고하였습니다.

다음 전회기 의결 안건 처리입니다.

[제52회-제1차]

전회기 수정 의결하신 '9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회 변경계획안은 6월 24일 집행 기관에 이송하였습니다.

다음 금회기 처리하실 안건은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출된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소관 공유재산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박병해 위원께서는 금일 위원님이 주관하시는 지역행사 참석관계로 출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리겠습니다.

2. 제52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15시 09분)

● 의장 김영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52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미 통보한 바와 같이 제52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는 8월 29일부터 8월 30일까지 2일간으로 하여 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된 의안을 처리하고자 합니다.

본 의사일정에 대하여 다른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제52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회기는 8월 29일부터 8월 30일까지 2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15시 10분)

● 의장 김영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관리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국장 발언대로 나옴)

● 관리국장 신재철

존경하는 김영세 의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4년동안 충북 교육발전을 위하여 온갖 정성과 노력을 기울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리며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중개정법률 및 지방재정법시행령중개정령에 의거 교육위원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관한 조항을 정비하고자 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포함하여 교육위원회의 심의·의결을 얻어야 하는 중요재산의 범위를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 제2항내지 제4항과 같이하고,

둘째, 예산과 사업예정에 따라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전년도 12월 31일까지 교육위원회

의 의결을 받던 것을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위원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며,

셋째,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공유재산의 취득·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였던 것을 중요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만을 포함한다고 개정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 공유재산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참 조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
재산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 별첨 2
(끝에 실음)

(관리국장 자리로 돌아감)

● 의장 김영세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은 제2차 본회의에서 질의·토론을 거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4. 회의록 서명위원

(15시 13분)

● 의장 김영세

다음은 회의록 서명위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김광수, 이근수, 두분 위원을 선출하는 것

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52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위원으로 김광수, 이근수, 두분 위원이 선출되었습니다.

두분 위원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52회 충청북도 교육위원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4분 산회)

[제52회-제1차]

○ 출석 위원 : 10명

의장 김영세, 부의장 이상일, 위원 이재희, 홍신희, 김응복, 김광수,
이근수, 김사수, 권혁풍, 장충호.

○ 출석 공무원 : 16명

교육감 정인영,	부교육감 김근학,	초등교육국장 김태길,
중등교육국장 박춘용,	관리국장 신재철,	공보담당관 정금옥,
기획감사담당관 신태희,	행정관리담당관 김진성,	초등장학과장 김학묵,
초등교직과장 노현우,	중등장학과장 정철진,	과학기술과장 박용두,
총무과장 고일영,	행정과장 이상찬,	재무과장 이기수,
시설과장 최명선.		

※ 별 책

- ▶ 의사일정(안) : 별첨1
- ▶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 별첨2

本 會 議 會 議 錄

忠清北道教育委員會 議事局

1995년 8월 30일 (수요일) 11시 00분

議事日程 (제5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1.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결
2. 기타안건처리

附議된 案件

1.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결

(11시 00분 개의)

● 의장 김영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2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제 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의장 김영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 공유재산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겠

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이나 다른의견이 있으신 분은 안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신

[제52회-제2차]

<p>분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교육비특별 회계소관 공유재산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의</p>	<p>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52회 충청북도교육위원 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산회합니다. 이상으로 제52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 회 본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폐회)</p>
---	---

- 출석위원 : 11명
 의장 김영세, 부의장 이상일, 위원 이재희, 홍신희, 김응복, 김광수, 이근수,
 김사수, 박병해, 권혁풍, 장충호.

- 출석 공무원 : 18명
 교육감 정인영, 부교육감 김근학, 초등교육국장 김태길,
 중등교육국장 박춘용, 관리국장 신재철, 공보담당관 정금옥,
 기획감사담당관 신태희, 행정관리담당관 김진성, 초등장학과장 김학목,
 초등교직과장 노현우, 중등장학과장 정철진, 중등교직과장 임순재,
 과학기술과장 박용두, 사회교육체육과장 이광용, 총무과장 고일영,
 행정과장 이상찬, 재무과장 이기수, 시설과장 최명선.

(별첨1)

議 事 日 程 (案)

第 52 回 忠淸北道教育委員會(臨時會)

1995.8.29-8.30(2일간)

日 時	附 議 案 件	備 考
95. 8.29(화) 14:00 15:00	※ 교육위원 협의회(교육위원실) ※ 개회식 【제1차 본회의 개의】 1. 제52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제1차 본회의 산회】	 회 기 8.29-8.30. (2일간)
8. 30(수) 11:00	【제2차 본회의 개의】 1.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결 2. 기타안건 처리 【제2차 본회의 산회】 ※ 폐 회	

(별첨2)

의안번호	제 52 - 1 호
의결년월일	1995. . .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제 출 자	충청북도교육감
제출년월일	1995. 7. 10.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증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52 - 1
----------	--------

제출년월일 : 1995. 7. 10.

제 출 자 : 충청북도교육감

□ 개 정 이 유

지방재정법증개정법률(법률 제4,795호, 1994. 12. 22.) 및 지방재정법시행령증개정령(대통령령 제14,646호, 1995. 5. 16.)에 의거 지방의회(교육위원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에 관한 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 주 요 골 자

- 관리계획에 포함하여 교육위원회의 심의·의결을 얻어야 하는 중요재산의 범위를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제2항 내지 제4항과 같이 함 (안 제5조).
- 예산과 사업예정에 따라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전년도 12월 31일까지 교육위원회의 의결을 받던 것을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위원회의 의결을 받도록 함 (안 제34조).
- 관리계획에 공유재산의 취득·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던 것을 중요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만을 포함함 (안 제34조제1항 및 제35조).

□ 개 정 근 거

- 지방재정법 제77조 (법률 제4,795호, 1994. 12. 22.)
-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 (대통령령 제14,646호, 1995. 5. 16.)

□ 조 례 안 : 덧붙임

□ 참 고 사 항

○ 신·구조문 대비표 : 덧붙임

○ 관계법령 발췌서 : 덧붙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을 말한다"를 "영 제84조제2항 내지 제4항에 규정된 재산으로 한다"로 하고 동항 제1호 내지 제3호를 삭제하여 이를 제5조 본문으로 하며, 동조 제2항 및 제3항을 삭제한다.

제34조제1항중 "예산과 사업예정에 따라"를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로, "취득·관리 및 처분"을 "취득·처분"으로 하고, "전년도 12월 31일까지"를 삭제하며, "변동이 있을 시는"을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추가경정예산 편성 전에"로 하고, 동조제2항중 "예산과 사업예정에 따라"를 "예산요구서를 제출하기 전에"로, "전년도 11월 30일까지"를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연도중에 관리계획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추가경정 예산요구서를 제출하기 전에 변경계획을"로 한다.

제35조중 "취득·처분·교환·대부 및 사용허가"를 "취득·처분 및 교환"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참 고 사 항

- 신·구조문대비표
- 관계법령 발췌서
 - 지방재정법 제 7 7 조
 - 지방재정법시행령 제 7 7 조
 - 지방재정법시행령 제 8 4 조
 -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13 조

신 · 구 조문 대비표

현	개 정 안
<p>제1조 ~ 제4조 (생략)</p> <p>제5조(중요재산) ①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13조 제1항 제5호에 규정된 중요재산이라 함은 지방재정법시행령(이하"령"이라 한다) 제77조에 규정된 공유재산중 <u>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을 말한다.</u> 다만, 조건없이 재산의 기부를 원하는 자로부터 이를 채납하고자 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1건당 예정가격 5억원이상의 재산</u> 2. <u>토지에 있어서는 1건당 1만제곱미터이상</u> 3. <u>제1호와 제2호외의 재산으로서 교육감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u> <p>② <u>토지의 경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면적 미만일지라도 제1호에 규정된 금액에 해당될 때에는 이를 중요재산으로 본다.</u></p> <p>③ <u>중요재산 한계기준으로서 1건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동일한 취득·처분방법으로 동시에 회계절차를 이행하는 경우</u> 2. <u>매수 또는 매각 상대방이 동일인일 경우</u> 3. <u>건물과 그 부지인 토지를 함께 취득, 처분하는 경우</u> 4. <u>당해 재산에 인접 또는 부대시설로 되어 있어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경우</u> 5. <u>분필 또는 분산되어 있는 재산이라도 당초 동일목적으로 운영관리하고 있는 경우</u> 6. <u>기타 사회통념상 또는 당해 재산의 구체적 여건에 따라 1건으로 하여 취득 또는 처분승인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u> 	<p>제1조 ~ 제4조 (현행과 같음)</p> <p>제5조(중요재산) (삭제) - - - - -</p> <p style="text-align: right;">영 제84조</p> <p>제2항 내지 제4항에 규정된 재산으로 한다.</p> <p>1. ~ 3. (삭제)</p> <p>② ~ ③ (삭제)</p>

관계법령 발췌서

지방재정법

제77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7조(공유재산의 범위) ① 법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부동산과 그 종물
2. 선박·부잔교·부선거 및 항공기와 그 종물
3. 공영사업 또는 시설에 사용하는 중요한 기계와 기구
4. 지상권·지역권·광업권 기타 이에 준하는 권리
5. 저작권·특허권·의장권·상표권·실용신안권 기타 이에 준하는 권리
6. 주식, 출자로 인한 권리 및 사채권·지방채증권·국채증권 기타 이에 준하는 유가증권

② 제1항제3호의 기계와 기구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기관차·전차·객차·화차·기동차등의 궤도차량
2.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하는 기계와 기구

제84조 ② 법제7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으로 한다. 이 경우

토지에 있어서는 제2호에 규정된 면적이하일지라도 제1호에 규정된 금액에 해당될 때에는 이를 포함한다.

1. 1건당 예정가격 5억원이상(구가 없는 시와 군의 경우에는 2억5천만원이상) · 이 경우 예정가격의 기준은 토지에 있어서는 공시지가를, 건물 및 기타재산에 있어서는 과세시가표준액으로 한다.
2. 토지에 있어서는 1건당 1만제곱미터이상(구가 없는 시와 군의 경우에는 5천제곱미터이상)

③제2항의 경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취득·처분은 이를 관리계획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지방재정법외의 법률에 의한 무상귀속
2.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환지
3. 법원의 판결에 의한 소유권등의 취득 또는 상실
4.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의한 손실보상
5. 토지수용법에 의한 재산의 수용
6.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에 의한 양여
7.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 제14조에 의한 중소기업자에 대한 공장용지 매각
8. 지방의회의결을 얻은 후 2회계연도가 경과되지 아니한 재산의 취득·처분
9. 다른 법률에 의하여 취득·처분이 의무화된 재산의 취득·처분

④제2항에서 “1건” 이라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동일한 취득·처분방법으로 동시에 회계절차를 이행할 경우
2. 매수 또는 매각 상대방이 동일인인 경우
3. 건물과 그 부지의 토지를 함께 취득·처분하는 경우
4. 당해 재산에 인접하거나 부대시설로 되어 있어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재산을 함께 취득·처분하는 경우
5. 분필 또는 분산되어 있는 재산이라도 동일 목적으로 운영관리되고 있는 재산을 함께 취득·처분하는 경우
6. 사회통념상 또는 당해 재산의 구체적 여건에 따라 1건으로 하여 취득 또는 처분 승인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13조(교육위원회의 의결사항) ① 교육위원회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학예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시·도의회에 제출할 조례안
2. 시·도의회에 제출할 예산안 및 결산
3. 시·도의회에 제출할 특별부과금·사용료·수수료·분담금 및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에 관한 사항
4. 기본재산 또는 적립금의 설치·관리 및 처분
5. 중요재산의 취득·처분
6. 공공시설의 설치·관리 및 처분
7.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외 의무분담이나 권리의 포기
8. 청원의 수리와 처리
9. 기타 법령과 시·도 조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② 제1항제4호 내지 제9호에 관한 교육위원회의 의결은 시·도의회가 의결한 것으로 본다.